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821
----------	------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이준형, 김용석, 이병도,
최 선, 이호대, 김경우,
권수정, 송아량, 이광호,
이경선, 이성배, 정진술,
신정호 의원(13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현장에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민간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어 일자리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은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에 따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청년청 등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환경의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헌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불 입 :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과 국가가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국정운영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만큼 일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러나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민간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의 무인화·자동화로 인한 민간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여성, 노숙인,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순노무 위주의 공공근로를 경력형성형 일자리인 뉴딜일자리로 확대한 바 있다.
- 또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 취업준비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스쿨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 그러나 노숙인, 장애인, 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정책대상이 세분화됨에 따라 각각의 소관 실·국에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도 수행하여,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실·국에서 시행되는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성장이며 행복임을 선언 하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환경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